

# 제천시 청결의 날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09
----------	-----

제출년월일 : '98. 3.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청풍명월의 고장임을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 국토청결의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청결의날 - 매월첫째주 금요일로 함.

○ 운 영

■ 참여대상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

■ 청결활동 장소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

##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붙 임 : 1. 제천시 청결의 날운영조례안

2. 관계 법규

# 제천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천시 청결의날(이하 "청결의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의날) 청결의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시장은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에서 청결활동을 실시한다.

제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규

## 【 폐기물관리법 】

### 제6조 (국민의 책무)

-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하수도·하천·호소·산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 【 자연환경보전법 】

###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